

## 신자유주의적 통치성, 주체, 그리고 공공성의 문제: Foucault의 1978, 1979년 강의를 중심으로\*

이문수\*\*

---

본 연구는 신자유주의에서 어떻게 개인들이 통치하기 탁월한 가능한 존재가 되는가의 문제를 Michel Foucault의 1979년의 강의를 중심으로 풀어보려는 목적을 가지고 수행되었다. Foucault는 신자유주의의 특징을 개인들에게 최대한의 자유를 주고 또는 욕망의 실현을 약속해주면서 동시에 그것들의 지속적인 경제화, 상품화를 통해 그 실현을 무한히 연기할 수 있는, 또 그렇게 함으로써 개인들을 계속 통치의 대상으로 묶어두는 하나의 통치 합리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서 개인들은 자유주의에서처럼 규율의 대상으로는 간주되고 있지 않고 외적으로 보면 자유롭게 행동하는 존재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자본이나 정부가 조정할 수 있는 환경적 변수에 반응하는 수동적 존재에 불과한 것으로 규정되고 있으며, 이를 Foucault는 신자유주의의 “환경유형적 개입”으로 일반화시킨다. 본 연구는 Foucault의 이와 같은 주장을 하는 배경이 되는 독일의 질서자유주의, 미국의 시카고학파의 이론에 대한 심층적 탐구를 통해 그 의미를 분명히 한다. 또한 신자유주의가 과연 공공성과 관련하여 어떤 역할을 하는지도 탐구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통치가 자유에 필연적으로 의존하기 때문에 자유를 주체적으로 활용한다면 현재의 통치에 저항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무기도 될 수 있다는 사실도 밝힐 것이다.

주제어: 신자유주의, 신자유주의적 주체, 환경적 개입

---

\* 이 논문은 2016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6S1 A5A2A01927634).

\*\* 미국 조지아대학교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현재 대구가톨릭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로 있다. 주요 관심분야는 행정철학, 행정윤리 등이다(E-mail: mslee@cu.ac.kr).

## I. 머리말

1979년 3월에 Collège de France에서 이루어진 강의에서 Foucault는 처음으로 고전적 자유주의와 새로운 자유주의, 즉 신자유주의에서의 homo œconomicus의 성격의 변화를 분명히 하고 있다. 고전적 자유주의에서는 개인들을 시장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한 건드릴 수 없는 존재로 간주하였다면, 신자유주의에서의 개인들은 총체적으로 관리가 가능한, Foucault(2008: 372)의 표현으로는 “탁월하게 통치 가능한(eminently governable)” 존재로 간주되기 시작되었다는 것이다. 신자유주의에서의 개인은 더 이상 개인적 이익을 소유한 자유롭고 자연적인 존재일 수 없게 된다. 신자유주의에서의 개인들은 Foucault(2008: 365)가 “환경적 유형의 개입”이라고 부르는 새로운 통치 행위에 그들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들을 적응시켜야만 하는 존재로 전략하는 것이다. 달리 말하면 신자유주의적 통치성은 개인들의 삶을 틀 지우는 환경에 작용하여 환경적 변수를 조정하면서 개인들의 삶의 형식과 내용에 깊숙이 개입하면서 작동된다고 보는 것이 Foucault의 생각인 것이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탁월하게 통치 가능한” 신자유주의적 주체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고전적 자유주의에서도 권력은 개인들의 몸과 마음을 새롭게 등장하는 자본주의적 노동과 생활양식에 적응시키려는 노력을 했었다. Foucault는 이러한 권력의 핵심을 18세기 말의 자유주의에서 출현하고 20세기의 복지국가를 지탱시켰던 규율권력이라고 말한다. 규율권력은 감옥, 학교, 병원 같은 기관들을 사회에 모세혈관처럼 배치하여 그 기관들을 거치는 주체를 규범화시키고 그들을 내적으로 복종시키려 하는 권력이다. 이에 반하여 신자유주의적 권력은 개개인의 내면에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개개인이 놓여 있는 ‘환경’ 또는 ‘게임의 규칙’에 개입하면서 환경을 권력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최적화 시키고자 한다. 따라서 Foucault가 신자유주의에서 권력은 ‘규율 권력’의 성격을 버리고 ‘환경개입 권력’이 되었다고 말하는 것은 복지국가의 위기 이후에 등장하는 신자본주의와 통치 권력 사이의 변화하는 상호관계를 간파했다는 것을 말한다.

지금까지 행정학을 포함한 사회과학 분야의 많은 학자들은 신자유주의는 자유주의와는 전혀 다른 성질을 지닌 주체로 인간들이 거듭나기를 요구한다는 점을 강조해왔다.<sup>1)</sup> 이때의 새로운 주체란 자신의 몸과 능력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끊임없이 자기 자신의 자본 가치를 올려야 하는 존재이다. 개인이 공직자가 되었든 아니면 일반 시민이

1) 관점을 행정학으로 국한시켜 말한다면, 신자유주의에서 성공하는 공직자는 기업가적 주체로 거듭나야 하고, 일반 시민들은 자신들의 욕구와 기대를 지닌 소비자적인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많은 연구들이 강조해왔다. (Clarke et al., 2007; Newman and Clarke, 2009).

되었든 상관없이 그들은 기업가적 주체성을 지니도록 요구 받는 것이다. 이러한 신자유주의적 주체는 경쟁에서 뒤처지는 낙오자나 인적자본으로서의 효용을 상실한 잉여 인간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안정된 삶이 아니라 위험을 감수하는 투자와 이동을 계속 해야만 하는 벼랑 끝의 삶을 살아야만 하는 것이다.

그러나 새로운 주체의 탄생을 주장하는 연구들이 간과하고 있는 점은 개인에게 직접 작용하지 않고 환경에만 개입하는 신자유주의적 권력의 본질이다. 본 논문은 신자유주의적 통치성에 대한 Foucault의 연구를 새롭게 해석하면서, 자유주의적 주체와는 전혀 다른 의미를 지니는 신자유주의적 주체가 등장하는 과정에서 결정적 역할을 하는 변화된 권력의 모습과 작동방식을 분명히 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여기서의 새로운 해석이란 Foucault가 1979년 Collège de France에서 한 강의인 《생명관리정치의 탄생》<sup>2)</sup>에 대한 독자적인 독해에 기초하고 있다.

사실 지금까지 신자유주의적 주체나 Foucault의 신자유주의적 통치에 대하여는 많은 연구의 축적이 이루어져왔다.<sup>3)</sup>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연구를 현시점에서 다시 하는 이유는 이들 연구들이 신자유주의적 권력의 작동논리와 신자유주의에 대한 Foucault의 주장에 대하여 의아스럽거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sup>4)</sup> 특히 최근 몇몇의 저명한 Foucault 연구자들이 Foucault가 사실

2) *The Birth of Biopolitics*라는 이름으로 출판된 책에서의 Biopolitics를 생명정치라고 하지 않고 생명관리정치라고 한 것은 국내의 번역서의 제목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많은 Foucault의 인용구나 인용문들은 그것이 번역되어 있다면 번역서의 번역을 바탕으로 한다. 따라서 논문에 표기되는 쪽수 역시 번역서의 쪽수를 말하는 것이다.

3) 《생명관리정치의 탄생》의 출판에 뒤이어 나온 대표적인 연구로는 Peters(2007), Hamann(2009), Dilts(2011), Gane(2013)를 들 수 있을 것이다. 이들 초기 연구의 초점은 그동안 근대적 주체들을 계보학적으로 탐구했던 Foucault가 현실의 문제를 문헌학적으로 해석하는 새로운 시도를 다른 연구들과 비교하여 이해하는 수준에 머물렀다고 볼 수 있다. 초가 연구들의 또 다른 특징을 들라면, 신자유주의 통치성과 Foucault가 말년에 집착했던 ‘자기배려 (care of the self)’를 무리하게 연관 지으려 했다는 점일 것이다. 신자유주의와 통치성과 관련해서 리자자와 가즈야, 다카쿠와 가즈미 역음(2015), 사토 요시유키(2014)는 여러 관점을 잘 정리하고 있다.

4) Foucault가 신자유주의를 옹호했다는 주장이 처음 나온 것은 Foucault가 말년에 신뢰했던 제자인 François Ewald에 의해서였다. Foucault의 유고를 편집하는 역할을 맡았던 Ewald는 《생명관리정치》에서 Foucault가 시카고학파의 대표자인 Gary Becker의 인적자본 이론에 대하여 자세히 말하는 것은 Foucault가 Becker의 이론에서 더 이상 통치 받지 않아도 되는 자유로운 개인을 발견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Becker 스스로도 자신이 Foucault의 《생명관리정치》를 읽고 Foucault의 생각과 자신의 생각은 상당부분 불일치하는 것은 아니다(‘I don’t disagree with much’)라고 말하고 있다(Becker et al, 2012: 3). Foucault가 신자유주의에 매력을 느꼈다는 소위 “유혹논란(seduction thesis)”에 대하여는 Dean(2018a)을 참고.

은 신자유주의를 묵시적으로 옹호하고 있었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sup>5)</sup> 이와 같은 주장의 진위는 시대에 저항하는 인물로 Foucault를 받아들이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에서도 꼭 한번은 집고 넘어가야 할 문제라고 보인다. 또한 Foucault가 주장하는 기업가로서의 신자유주의적 주체를 이해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대부분의 학자들이 신자유주의적 권력에 대한 Foucault의 심층적이고 계보학적인 연구의 관점을 채택하지 않으면서 생기는 문제들도 간과할 수 없다고 보인다.

본 논문은 먼저 신자유주의적 통치성은 권력이 개인을 둘러싼 환경에 대한 개입을 통해서 새로운 유형의 주체를 형성시키면서 작동된다는 주장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자 한다. Foucault는 1979년 강의 이전에도 자유주의적 통치의 등장과 관련하여 환경을 거론했었다. 그리고 1979년의 강의에서도 신자유주의적 통치를 결정짓는 환경에 대하여 명확한 정의를 내리고 있지는 않지만 신자유주의의 두 가지 흐름, 즉 독일의 질서자유주의와 미국의 시카고학파에서 보는 환경에 천착하면서 그 구성과 역할에 대하여 주목할 만한 설명을 하고 있다.

Foucault(2008: 403)는 또한 신자유주의적 통치성과 환경에 대한 개입 사이의 관련을 말하는 과정에서 그전에 사용하지 않았던 개념 하나를 등장시키는데, 이것이 바로 “통치화 가능성(governability)”이다. Foucault에 따르면, 신자유주의는 환경에 대한 개입을 통해 통치화 가능성을 최대한으로 이용하면서 우리가 쉽게 벗어날 수 없는, 막스 베버의 표현을 빌리면 “stahlhartes Gehäuse(강철 같은 겉껍질)”을 만들고 있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신자유주의는 Foucault의 오래된 문제의식, 즉 “어떻게 하면 통치 받지 않고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다른 형태의 통치를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적은 통치를 받을 수 있을까?”라는 질문들에 근본적 의문을 던지는 새로운 형태의 통치성을 말하고 있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1979년 이전에 Foucault가 환경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를 살펴 볼 것이다. 그 다음에는 Foucault가 보는 현재의 신자유주의 통치성의 두 가지 원천인 독일의 질서자유주의와 미국의 시카고학파에서 보는 통치와 환경 간의 상호작용에 대한 서로 유사하지만 차별화시킬 수 있는 관점을 알아본다. 신자유주의적 통치성의 핵심을 환경에 대한 개입으로 보는 Foucault의 주장은 시카고학파 특히 Gary Becker의 인적자본 이론을 분석하는 가운데 등장한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집중적인 분석이 이루어 질 것이다. 마지막 평가 부분에서는, Foucault가 신자유주의는 환경에 대한 개입을 통해 개인들에 대한 통치가능성을 최대한으로 활용

5) 이 부분에 대한 대표적인 책은 Zamora & Behrent(2016)이다. 이와 같은 의견에 동조하는 연구들로는 Zamora(2014a; 2014b)와 Dean(2018a; 2018b)을 참고.

하면서 작동한다고 말하고 있음을 전제 하에, Foucault가 명확히 말하고 있지 않은 환경의 본질과 작동방식을 그전까지의 논의와 새로운 연구들을 기초로 조금은 과감하게 추론해보는 작업을 할 것이다. 그리고 덧붙여 Foucault의 주장에 그가 의식하지 못한 빈공간이 없는가를 살펴 볼 것이다. 마지막으로 신자유주의적 지배 아래에서 공공성의 회복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회복의 단초를 찾는 난제를 어떻게 풀어 나가야 할지를 순차적으로 검토해 볼 것이다.

## II. Foucault와 환경

신자유주의에 대한 역사적 분석을 마무리 하는 1979년 3월 21일 강의의 마지막을 Foucault는 다음과 같은 의미심장한 문장으로 끝맺음한다.

(신자유주의에서는) 차이의 체계가 최적화되는 사회, 변동하는 질차에 그 영역이 자유롭게 열려 있는 사회, 개인들이나 소수자들의 실천에 관용을 보이는 사회, 게임 참가자들과 관련해서가 아니라 **게임의 규칙들과 관련해 작용하는 사회**, 마지막으로 개인을 내적으로 종속화 하는 유형이 아니라 **환경적 유형의 개인이 행해지는 사회**의 이미지, 관념, 주체-프로그램이 나타납니다. 나머지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좀 더 상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Foucault, 2008: 259-60, 필자강조).

그리고 다음 주 3월 28일 강의의 서두에서 Foucault는 다음과 같은 진술로 자신이 전 주에 한 진술의 의미를 분명히 하고 있다.

[...] Becker의 정의 내에서 homo  $\alpha$ economicus 즉 현실을 수용하는 자 혹은 환경의 변수들 내에서의 변화에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자인 homo  $\alpha$ economicus는 조종이 가능한 것, 환경에 인위적으로 도입된 체계적 변화에 체계적으로 반응하는 자인 것입니다. homo  $\alpha$ economicus는 탁월하게 **통치가능(governable)** 자입니다. 건드릴 수 없는 자유방임의 상대방인 homo  $\alpha$ economicus는 이제 환경에 작용을 가하고 **환경의 변수들을 체계적으로 변형시키게 될 통치성의 상관물**로서 출현하는 것입니다(Foucault, 2008: 270-71, 필자강조).

지금 인용한 통치와 환경에 대한 Foucault의 진술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가가 바로 본 논문이 밝혀야 할 핵심 내용을 이루게 된다. 강의가 진행될 때 Foucault에게 통

치도 환경도 전혀 새로운 개념은 아니었다. 여러 학자들에 따르면 환경(milieu)은 Foucault의 스승이었던 Georges Canguilhem의 문제의식이기도 했고, Foucault 역시 이를 사회변화의 중요한 변수로 취급했었다 (Schuilenburg & Peeters, 2015; Catro, 2016; Moisaner, Groß & Eräranta, 2017; Lemke, 2014). 문제는 2019년 강의에서 통치와 환경 사이의 관계의 범위와 성격이 과거와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 부분을 이해하려면 신자유주의가 등장하면서 통치-환경-주체의 관계를 둘러싸고 나타났던 Foucault의 생각의 변화를 읽을 수 있어야 한다.

## 1. 안전장치(dispositif of security)로서의 환경

Foucault의 권력 이론은 주권(sovareign power)에 대항하면서 성립되었다. 주권은 개인의 신체와 재산 등에 직접 작용하면서 그것들을 박탈, 감소시킬 수 있는 위협을 통해 작동하는 권력이다. Foucault는 주권이 인간의 몸과 재산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하는 폭력을 동원하여 자신의 정당성을 유지했다면, 18세기 이후 등장하는 규율 권력은 사람의 몸과 생활방식에 직접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시설물의 구조와 배치, 반복적인 훈련과 시험 등에 따른 상시적 감시를 통해서 권력에 대한 자발적 복종을 이끌어내는 하나의 환경 개입 권력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또한 1978년의 강의인 《안전, 영토, 인구》에서 Foucault는 통치성(governmentality)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사용하여 자유주의 시대의 권력관계를 새롭게 조망하는데, 이때 통치성의 중핵을 이루는 내용은 “행동에 대한 행동(conducting of conduct)”인 것으로, 이 또한 권력이 행동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어 특정한 목적을 달성한다는 의미보다는 행동이 이루어지는 환경에 대한 통제를 통해 권력자가 의도한 행동을 이끌어 낸다는 의미가 강하다.

그러나 1979년 이전까지 권력 작동 방식으로서의 환경적 개입에 대한 Foucault의 생각은 상당히 제한적이었다. 개인들에 대한 직접적 통치가 아닌 개인들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에 대한 조종과 통제, 즉 “원거리 통치(government at a distance)”를 아직 Foucault는 통치의 일반적 논리로 보고 있지 않았으면서, 특별한 목적을 위해 활용되는 것으로만 보고 있다는 사실이다. 여기서의 특별한 목적은 바로 안전 확보를 말하는 것이다.

Foucault는 1978년 강의의 처음 3주를 법과 규율과 대비되는 의미로서의 “안전장치(apparatuses of security)”를 설명하는데 할애하고 있다. 법이 사람들의 행동을 금지하고 규제하는 부정적 성격을 지니고, 규율은 그렇게 하게하고, 촉진하는 긍정

적 권력의 성격을 지니는 것이라면, Foucault(2007: 77)에 따르면, 안전은 모든 것을 그냥 “하게 내버려둬라, 일어나게 내버려둬라”는 식으로, 달리 말하면 그 모든 것의 무작위적이고 우연적인 효과를 방임하고 중립화시키는 방식으로 작동되는 성격을 지니는 것이다.

Foucault(2007: 28-30)는 그 예의 하나로 시대에 따라 다르게 변화되었던 질병에 대한 관리를 들고 있다. 유럽에서 중세에서 중세 말까지 나병 환자들은 살던 곳에서 추방되는 과정을 통해서 병에 걸리지 않은 사람들과 이분법적으로 분할되었다. 그러나 16세기 흑사병에 대한 대처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환자를 추방시키는 것이 아니라 흑사병이 있는 지역과 도시를 격자화시키면서 “그들이 언제, 어떻게, 몇 시에 외출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음식을 먹어야 하는지를 [...] 순찰자에게 질문을 열어주고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도록 강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안전장치는 18세기 이후 큰 변화를 보이게 되는데, Foucault는 이를 천연두에 대한 대처의 예를 들어 말하고 있다. 즉, 나병이나 흑사병 환자를 다루었던 방식인 추방이나 격리에서 벗어나서 전염병에 대한 새로운 안전장치는 확률을 결정하고 통계학을 통한 평균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그 초점을 이동시킨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질병의 완전한 퇴치가 아니라 천연두에 대한 정상분포를 산정하고 분포곡선을 기초로 비정상적 상태에 있는 것을 정상에 가까운 것으로 만들려는 노력이다. 다음과 같은 Foucault(2007:29-30)의 진술은 통치방식의 변화와 관련하여 이와 같은 사실을 적절히 묘사하고 있다.

여기서 근본적인 문제는 몇 사람이 몇 살에 천연두에 걸렸는지, 사망률은 얼마이며 어떤 상해와 후유증이 있는지, 접종을 하는 데 감수해야 하는 위험은 무엇인지, 접종을 받았는데도 개인이 천연두에 걸리거나 죽어버릴 확률은 얼마인지, 일반적으로 인구에 미치는 통계적 효과는 무엇인지 등, 요컨대 나병환자수용소에 서와 같은 배제의 문제도 아니고 흑사병에서와 같은 격리의 문제도 아닌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질병에 대한 안전장치는 18세기 이후로 다른 주요 영역으로 확대되기 시작한다. 급속한 도시화는 도시 공간을 안전장치에 따라 구획하고 시설물들을 배치하게끔 만들게 되는 것이다. Foucault(2007: 32-48)는 이때의 안전장치는 도시 안에서의 모든 활동을 세세하게 조사하여 이를 기초로 도시를 계획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도시 공간을 순환하는 사람과 물자들을 측정하고 여기서 나오는 정상분포나 평균들에 기초해서 집, 도로, 구역 등을 건설하려는 것을 말한다고 한다. Foucault(2007:

56-80)는 또한 안전장치는 식량수급과 관련해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니게 된다는 점을 지적한다. 이제부터 국가는 식량부족 현상에 즉각적으로 대응하여 이를 제거하려는 방식을 버리고, 이와 같은 현상이 일어나기 전에 그것이 미치게 될 가능한 효과들을 예측하고, 시장의 작용으로 식량부족 현상이 자연스럽게 해결되게끔 방관하는 수동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간단히 말해, 안전장치는 사건들의 발생이 자연스럽게 자신의 길을 걷게끔 하면서 그것의 결과를 통제하는데 있는 것으로, 여기에는 확률의 계산에 따라 무작위적이고 우연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이나 현상들이 스스로 상쇄(cancel out)된다는 믿음이 뒷받침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Foucault에게 안전장치는 일련의 우연적이고 무작위적인 사건에 개입하며, 통계적 계산을 기초로 인간 활동이 전개되는 환경을 최적화시키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환경은 그러므로 우연적 사건이 전개되는 일련의 개연적인 상태를 말한다. 이 점에 대한 다음과 같은 Foucault, 2007: 48-9)의 진술은 주의 깊은 독해를 필요로 한다.

안전은 다가치적이고 가변적인 틀 내에서 조정되어야 할 사건, 혹은 사건들이나 일어날만한 법한 여러 요소의 계열에 대해 환경(milieu)을 정비하려고 합니다. 따라서 안전 특유의 공간은 가능한 사건들의 계열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 이른바 환경이라는 것은 우연적 요소들의 계열이 전개되는 공간입니다 [...] 환경이란 무엇일까요? **환경은 어떤 물체가 다른 물체에 거리를 두고 미치는 행동을 설명하기 위해 필요한 것입니다** [...] 안전장치는 이 환경 개념이 형성되어 분리되기 이전에 벌써 환경에 관여하고 있으며, 환경을 만들어내고 조직하며 정비합니다. 따라서 환경은 순환이 이루어지는 곳이 될 것입니다.(필자강조)

결론적으로 말해서《안전, 영토, 인구》에서 환경 개입 권력은 안전장치로 기능하는 것으로, 환경의 우연성을 길들이며, 게임의 규칙을 설정하면서 개인들의 활동이나 사건들을 통치 가능한 것으로 만들려는 권력인 것이다. 즉, 안전과 관련하여 개인의 위생,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 식량의 배분 등을 둘러싼 환경에 대하여 원격적 방식으로 작동하여 사람이나 사건들을 어느 정도 통치 가능한 것으로 만들든 물론, 그 환경 자체를 최적화, 균질화하려는 권력인 것이다. 그러나 “어떤 물체가 다른 물체에 거리를 두고 미치는 행동을 설명하기 위해” 구상된 환경 또는 환경 개입 권력에 대한 설명은 1978년 강의에서는 더 이상의 진전을 보지 못하고 1979년의 강의의 후반부에서 구체화된다. 여기서 Foucault는 신자유주의에서 통치와 환경의 관계는 과거 18, 19 세기의 안전 확보라는 목적을 넘어서서 모든 사람들의 삶과 그들이 관계된 사건들을



통치 가능한 것으로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주장을 한다. 통치가 현실화되는 과정에서 환경은 이제부터 안전이라는 범위를 넘어서 우리의 삶이 전개되는 모든 영역과 관련을 맺게 되는 것이다.

## 2. 통치 가능성과 환경

Foucault가 보는 신자유주의적 통치성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그것이 환경개입 권력이라는 점임은 앞에서 밝혔다. 과거의 통치가 안전의 확보를 위해서만 환경에 개입을 했다면 신자유주의적 통치는 모든 영역에 걸쳐서 인간들의 행동으로부터 특정한 효과를 얻기 위해서 그들의 환경을 구조화시키는 기술 혹은 기제의 형태를 취한다. Foucault는 이 부문을 《생명관리정치의 탄생》의 후반부에서 미국의 시카고학과 특히 Gary Becker의 인적자본 이론을 소개하면서 분명히 하고 있다.

18세기의 homo oeconomicus는 권력 행사의 직접적 대상이 될 수 없었는데 그 이유는 이들이 “자유방임의 주체이면서 객체”로서, 권력의 간섭에서 자유로운 존재이어야만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Becker(Foucault, 2008: 270)는 새롭게 구성되는 자유주의에서 homo oeconomicus는 “환경의 변수의 변동에 체계적으로 반응하는” 인간이 되어야만 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신자유주의에서의 인간은 “관리 가능한(manageable)”한 존재이며 인위적으로 변화시킨 환경에 체계적으로 반응하는 존재로 변하는 것이다. 단적으로 말해서 신자유주의적 주체는 “탁월하게 통치 가능한(eminently governable)” 존재로 형성되어야 하는 것이다. 더 이상 인간은 자유방임의 틀 안에서 자유롭게 행동하는 존재가 아니라 환경에 개입하여 그 변수들을 체계적으로 조작하는 신자유주의적 통치성의 대응물이 될 뿐이다.

필자가 보기에 Foucault의 신자유주의에 대한 분석의 핵심은 바로 이 환경에 대한 행동에 있다고 보이는데, 유감스럽게도 Foucault의 통치성 강의를 분석했던 많은 연구들은 이 부분을 간과하고 있다(Taylan, 2017). 따라서 본 연구는 특히 Foucault를 신자유주의에 대한 암묵적 옹호자로 간주하는 연구들에 대한 반론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비록 Foucault가 신자유주의가 주는 무한경쟁 속의 자유로부터 반항적 행동의 기회를 포착했는지라도 그는 항상 그 자유라는 것이 통제 가능한 환경 속에서 특정 목적을 위해서 주어진 것임을 더욱 강조했다라는 사실을 유념해야 한다(Lorenzini, 2018). 겉으로 볼 때 신자유주의가 부여하는 자유는 기존의 지배-복종의 관계에서 인간들을 어느 정도 해방시키는 것은 사실이지만, 좀 더 안쪽을 들여다보면 이는 인간들을 권력이 특정 목적을 가지고 구성한 환경에 적응해야만 하는 존재로 전락시킴으로

써 종국적으로는 인간을 더욱 종속적 존재로 만드는 것이다.<sup>6)</sup>

위에서 Becker의 주장을 통해 신자유주의에서의 환경의 성격을 분명히 하였지만 Foucault에게 신자유주의와 환경과의 관계를 분명히 해준 계기는 아마도 그가 독자적으로 분석한 독일의 질서자유주의자들의 주장에 있다고 보인다. 여기서 Foucault는 나치정권을 거치면서 형성된 독일의 질서자유주의자들에 대한 세심한 분석을 통해서 자본주의적 시장경제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정부가 안전장치 이상의 의미를 지니는 환경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는 당위를 발견할 수 있었다. 따라서 다음 장에서는 질서자유주의에서의 통치가 어떠한 환경적 개입에 입각해 있는가 하는 문제와 미국이 시카고학파가 이를 어떤 방향으로 발전시켰는지를 Foucault의 강의에 의존하면서 분석할 것이다.

### Ⅲ. 신자유주의와 환경개입 권력

#### 1. 독일의 질서자유주의에서의 환경개입 권력

1930년대에 독일 Freiburg 대학의 경제학자 Walter Eucken을 시작으로 Wilhelm Röpke, Alexander Rüstow로 대표되는 독일의 질서자유주의는 제2차 세계대전의 패전 후에 분단된 서쪽 독일을 철저하게 시장질서에 기초한 국가로 건설하는데 필요한 이론적 자원을 제공했다. 과거 자유주의에서의 시장이 국가에 의한 정당화 과정을 거치면서 성립되었다면 질서자유주의자들은 - 패전 후 새롭게 국가를 건설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의해서 - 국가 자체의 정당성을 시장질서에 놓기를 시도한다. 그들은 또한 시장은 결코 자연적인 소여가 아님을 분명히 하면서 시장기능이 원활하게 작동되는 조건을 만드는 정책을 무엇보다 우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하나의 사회철학으로도 볼 수 있는 질서자유주의는 시장이 작동하는 과정에 대하여는 가격이나 생산량 등에 대하여 그 어떠한 제한도 가해져서는

6) 여기서 우리는 자유의 부여를 통한 종속화 현상을 곳곳에서 관찰 할 수 있다. 특히 노동 부문에 있어서의 노조의 파괴와 개인적 자유의 강조는 그 개인이 처하게 되는 경쟁적 환경을 생각한다면 그 개인에게 부여된 자유는 또 다른 유형, 무형의 종속을 양산하게 된다. 비정규직 노동자는 자유로운 존재들이지만 그들에게 그 자유가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를 생각하면 권력이 개인에게 직접적으로 행사되는 것이 아니라 그 개인들이 처하게 되는 환경을 재구조화시키면서 그들을 새로운 주체로 만들어가는 것에서 우리는 신자유주의적 주체화의 핵심을 파악할 수 있다.

안 되는 것이지만 시장이 기능하는 틀(framework), 다시 말해 “경제적 행위자들의 사회적 환경(die soziale Umwelt)”에 대하여는 적극적 개입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Foucault, 2008: 220).

질서자유주의자들이 생각하는 die soziale Umwelt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경쟁이다. 이 때 질서자유주의자들이 보는 경쟁은 결코 인간의 속성에 내재하고 있는 경쟁 성향을 외부로 드러내는 것이거나 역사적·사회적으로 이미 주어진 것이 아니다. 경쟁은 자신만의 내적 논리와 구조를 지니고 있으면서 우리의 직관에 의해 파악할 수 있는 하나의 형식성의 원칙이다. 따라서 Foucault(2008: 120)는 현상학적 개념을 가져와서 질서자유주의자들이 경쟁을 하나의 “형상(eidos)”으로 보고 있다고 말한다. 이 관점에서 보면 경쟁은 인간들 사이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게임이 아니라 “불평등 간의 공식적 게임(a formal game of the inequalities)”인 것으로, 경쟁이 그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신중하고 세밀하게 구성되는 특정한 조건들을 필요로 하는 것이다. 다음과 같은 Foucault(2008: 120)의 언급은 질서자유주의자가 보는 경쟁의 개념을 분명히 하고 있다.

Husserl에게 특정한 조건 아래에서만 직관에 의해 형식적 구조가 파악되듯이 같은 방식으로 본질적 경제 논리로서의 경쟁도 [...] 특정한 조건 아래에서만 나타나고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이는 순수한 경쟁은 원초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는 것을 말한다. 그것은 오직 오랜 노력의 결과이며, 사실 순수한 경쟁은 달성할 수 없는 것이다. 순수한 경쟁은 오로지 무한정한 정책적 개입을 전제로 하는 목표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경쟁은 따라서 존중되어야 할 자연적 소여가 아닌 것으로 통치 기술의 역사적 목표인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질서자유주의의 관점에서 시장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경쟁이란 결코 시장에서의 교환과 같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내적 논리를 갖고 자기 고유의 구조”를 갖는 것으로, “그런 논리가 존중되는 조건 아래에서만 산출”되는 하나의 의도적 환경이라고 주장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Foucault, 2008: 185-6). 즉, 경쟁이란 정부에 의해서 개개인의 활동을 조절하고 사회를 조직화하는 방식으로 의도적으로 생산되어야만 하는 환경인 것이다. 따라서 질서자유주의자들에 따르면, 시장 안에 자연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경쟁이라는 환경을 의도적으로 정부가 지속적으로 구축해나갈 때 개인들의 삶은 하나의 기업이 되면서, 개인이나 사건들이 비로소 통치 가능한 것으로 변하게 되는 것이다.

현상학을 20세기 중요한 철학적 흐름으로 정립한 Edmund Husserl과 같은 대학

에 있으면서 오랫동안 교류했던 Eucken은 경제적 인간에 의한 자신의 이익의 추구는 변하지 않는 것이지만 그의 정신적 환경은 변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경제학은 경제적 공간에서 작동하는 인간의 마음을 연구하는 학문에 기초하여 그 인간의 정신적 환경에 개입해야하는 것이다. 현상학의 방법론의 일부를 경제학 연구에 도입한 Eucken을 비롯해서 질서자유주의를 주장하는 경제학자들은 따라서 추상적 인간행동이 아니라 “생활세계(Lebenswelt)”와 삶의 철학에 상당히 경도되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Husserl의 주체와 마찬가지로 생활세계에 항상 이미 존재하는 homo oeconomicus로서의 경제적 행위자에 대한 현상학은 그를 생동하는 삶의 조건 아래에서 고찰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때의 homo oeconomicus는 중립적 또는 비어있는 환경 안에서가 아니라 자신이 기원한 사회적 배경 안에서 행동하며, 따라서 개인들의 이익이 출현하는 그 배경을 아는 것은 경제학의 역할이 된다(Oksala, 2016).

질서자유주의 경제학자들 사이에서도 정부가 시장 환경에 개입하는 범위나 정도에 있어서 차이를 보인다. 초기에 활동했던 Eucken 같은 경우는 시장이 경쟁이라는 원리를 중심으로 작동되기 위해서 필요한 법률적, 제도적 기초를 정부가 제공해야한다고 본 반면 Röpke나 Rüstow는 개인의 주체성을 포함한 생활세계 자체를 시장 친화적인 것으로 바꿀 것을 주장한다. 여기서는 이들의 핵심 주장을 정리한다는 의미에서 Rüstow가 주장한 “비탈폴리틱(Vitalpolitik)”, 우리말로는 생명정책으로 번역할 수 있는 것에 대한 Foucault의 생각을 살펴볼 필요가 생긴다.

Foucault(2008: 148) 스스로 애매모호하다고 말하는 질서자유주의의 생명정책은 “기업의 형식을 가진 사회의 골격”을 만드는 것이라고 하면서,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기업’이라는 형식을 가능한 한 최대한으로 확산시키고 증대시킴으로써 일반화시키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뒤이어 Foucault(2008: 148)는 “사회체 내부에 이처럼 ‘기업’의 형식을 파급시키는 것, 이것이 바로 신자유주의 정책의 관건”이라고 말한다. Foucault(2008: 157)는 2월 14일 강의의 각주를 통해서 Rüstow 스스로 다음과 같이 생명정책을 정의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생명정책은 [...] 전통적인 사회정책처럼 무엇보다 임금의 상승과 노동시간의 단축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저녁부터 아침까지 노동자 전체의 생활환경, 그들의 실제적·구체적 상황을 의식하는 것이다. 이런 시각에서 보면 물질적·도덕적 위생, 소유권의 자각, 사회통합의 자각 등이 임금과 노동시간만큼이나 중요하다.

질서자유주의(가)는 나치의 국가사회주의의 그늘에서 빨리 벗어나서 정당성이 부족

한 국가를 재건하는 일은 정부가 개인의 일상에서부터 도시환경, 교육영역에 개입하여 경쟁이 추구되는 환경을 의도적으로 구축함으로써 모든 개인의 삶을 하나의 기업으로 전환시키는데 있다고 본 것이다. von Mises와 Hayek로 대표되는 오스트리아 학파가 시장경제에 대하여 진화론적, 개인적 접근을 중요시했다면 질서자유주의자들은 개인의 심리에서 시작하여 사회구조 자체를 시장친화적인 것으로 변화시켜서 개인, 조직, 사회, 국가 전체를 기업으로 보는 관점을 정착시키고자 했다는 것이 Foucault의 생각이었다. 따라서 Foucault에게 질서자유주의는 환경적 변수의 조장을 통해서 개인들을 시장경제라는 틀 안에서 “통치 가능한” 존재로 만드는 경제철학인 것이다.

## 2. 미국의 신자유주의에서의 환경개입 권력<sup>8)</sup>

Foucault가 미국식 신자유주의에 이론적 초석을 세웠다고 평가하는 시카고학파는 위에서 언급한 인적자본 이론을 주로 다루었던 Gary Becker나 Theodore Shultz를 일컫는다. 그리고 이들의 모든 이론을 다루지 않고 Foucault는 범죄와 그 처벌에 대한 이론만을 정교화 시키면서 신자유주의의 특징을 이끌어 내고 있다. 뒤에서 신자유주의적 주체형성과 관련하여 다시 다루게 되겠지만, Becker는 범죄에 우호적인 환경 속에 있거나, 아니면 어떤 특수한 범죄적 기질이나 성향을 지닌 사람이 저지르는 것으로 사회적 위험과 위해를 야기하는 것을 범죄로 보지 않는다. 그의 범죄에 대한 정의

---

7) 질서자유주의가 최근에 다시 하나의 뚜렷한 경제이론으로 재부상하고 있다. 그 이유는 EU 내부에서의 경제위기, 특히 2010년대 초반의 그리스의 경제위기에 대한 유럽중앙은행이나 IMF의 대응이 독일의 질서자유주의를 이론적 기초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인식 때문이다. 즉, 과도한 내핍·긴축정책(austerity policy)과 대폭적인 사회보장의 축소는 적극적인 국가의 개입을 통해서 자유경쟁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모든 개인의 삶을 기업으로 간주하는 질서자유주의자들의 주장과 맥이 닿는 다는 주장에 귀를 기울일 필요는 있어 보인다. 특히 Werner Bonefeld(2017)와 Van Der Bart(2016)은 질서자유주의로의 회귀는 기독교적 근본주의에 입각한 권위주의적 정부를 탄생시킬 것이라는 경고를 하고 있다.

8) 1979년 3월 21일 강의에서 Foucault(2008: 242)는 독일의 질서자유주의에서 바라보는 기업 개념의 확산을 통한 전체 사회의 경제화를 말하면서, 미국의 신자유주의와는 다른 특징 즉 “차가운 경쟁 체제에 반대되는 것으로서 제시되는 따뜻한 도덕적 가치”를 말하고 있다. 독일 질서자유주의자들의 고민, 구체적으로 말하면 전체 사회의 기업화·경제화와 경쟁사회의 “차갑고, 무정하고, 계산적이고, 합리적이고 기계적인” 성격을 조화시키려는 노력은 모호한 것이었다고 Foucault(2008: 243)는 말한다. 중요한 사실은 그 뒤 신자유주의의 주류로 자리 잡는 시카고학파의 경제이론은 질서자유주의가 지니고 있는 약간의 가치적·규범적 측면마저도 필요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는 점에 있다.

는 너무 간단하다. “개인으로 하여금 형벌에 처해질 수 있는 위험을 야기하는 모든 행동을 범죄라고 부른다”(Foucault, 2008: 298). 여기서 범죄를 정의하는데 범죄의 내용은 아무런 의미가 없고 단지 범죄를 행하는 사람의 계산만이 중요한 요소가 된다. 살인죄와 주차위반과 같은 경범죄 사이에 아무런 질적 차이도 존재하지 않는다.

덧붙여 중요한 것은 개인이 자신이 얻을 이익과 처벌받을 수 있다는 위험을 계산하면서 범죄를 일으킨다는 점이다. 범죄자란 또 다른 경제적 주체일 뿐 특별한 존재가 아니다. 따라서 범죄를 예방하고 방지한다는 것은 처음부터 범죄자를 만들지 말아야 한다는 당위적 명령이 아니라 행위자가 범죄를 통해 얻는 이익과 손해를 계산하는 환경의 변화를 통해서 사회가 용인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범죄를 조절한다는 의미를 지니는 것이다. 과거의 규율권력은 개개인의 내면에 작동하여 규범을 내면화시키면서 범죄 자체를 줄이거나 없애려했다. 그에 반해 시카고학파의 범죄이론에 따르면 권력은 규율 체계를 통해서 개개인을 순종적 존재로 만들 필요가 없으며, 단지 범죄시장이라는 ‘환경’에 개입하면서 개인들을 더욱 통치 가능한 존재로 만드는 것이다.

Becker의 범죄와 형벌의 이론에서 보면 범죄자 또는 잠재적 범죄자는 환경적 변수 아래에서 자신의 행동이 초래하는 위험, 비용, 이익을 교량해서 범죄를 범할 지를 결정하는 자이다. 이때의 개인은 어떤 특정한 사회-심리학적 특징을 지닌 사람도 아니고 특별한 정체성을 지닌 집단에 속한 사람도 아니다. 그리고 범죄를 저지를 때 그것이 경범죄이든 살인죄이든 그것을 수행하는데 개인이 사용하는 계산논리는 같은 것이다. 따라서 신자유주의에서의 개인은 자유주의에서의 개인 즉 “권력행사와 관련한 무형(intangible)의 요소”가 아니라 권력에 의한 환경변수의 조작에 체계적으로 반응하는 존재로 그려진다(Foucault, 2008: 270). 이를 좀 더 강하게 말하면, 자유주의에서의 개인이란 자신의 행동에 대하여 권력이 최소한으로 개입하는 것을 통치 합리성으로 보는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라면 신자유주의에서의 개인은 권력에 의한 환경적 변수의 조작에 기초하여 자신의 행동이 원적으로 조정되는 것을 통치 합리성의 근간으로 삼는 세상에 살고 있다는 의미이다.

Foucault에 대한 연구에 정통한 학자인 Mitchell Dean(2018b)에 따르면, 시카고학파의 인적 자본이론이 모든 개인들이 특별한 정체성에 기초하지 않고 모두가 자유로운 상태에서 손실과 이득의 관점에서 행동한다는 점을 주장한다는 면에서 개인을 탈주체화(de-subjectivation)시키고 있다고 주장한다. 과거의 권력이 개인들을 권력기관의 호명(interpellation)에 응답하는 자발적 복종을 통해서 주체화시켰다는 Louis Althusser의 주장의 관점에서 보면, 여기서의 탈주체화란 어느 정도 해방적 의미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시카고학파의 인적자본 이론에 따른 탈주체화는 범죄를 저

지른 사람에게 범죄자란 정체성을 부과하지 않는다는 의미 이상을 가지고 있지 않다. 문제는 범죄자란 정체성을 버리는 것이 과연 모든 개인들을 “행위에 대한 행위”로서의 통치성에서도 벗어날 수 있게 만드는가이다. 그러나 권력은 범죄도 하나의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행위처럼 보면서, 범죄시장이라는 환경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자신의 목적을 실현하려고 한다. 따라서 Foucault(2008: 360-363)가 분석하고 있는, 때로는 관대하고 때로는 강경한 미국의 마약정책에서 보듯이 국가권력은 마약의 퇴치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약시장이라는 환경의 변수를 조절하면서 마약의 공급과 수요를 비용의 관점에서 최적화시키려고 하는 것이다. 따라서 비록 시카고학파의 인적자본 이론이 특수한 주체의 형성을 용납하고 있지 않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권력의 작용에서 자유로운 주체를 가정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이다.

Foucault의 《생명관리정치》를 전체적으로 이해한다면 Foucault가 보는 시카고학파의 신자유주의는 자율적 시장과 권력에 의한 환경 변수의 조정 즉 사회적 영역에 대한 적극적 개입을 모두 필요로 하는 통치성의 한 유형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신자유주의는 탈주체화가 아니라 새로운 유형의 homo œconomicus로 모든 개인들을 주체화시키려는 시도라고 보는 것이 더욱 타당할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논문의 마지막 주제에 도달하게 된다. 그것은 바로 1979년 Foucault가 말한 신자유주의적 주체인 homo œconomicus를 21세기 초반기를 사는 우리가 의미의 가감 없이 받아드릴 수 있는지, 그리고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 통치에 최적화된 존재인지를 더욱 깊게 탐구하는 것이다.

## IV. 신자유주의적 주체, 환경, 통치가능성

### 1. 통치와 주체성

같은 해에 프랑스 정치경제학자인 Dardot & Laval(2013)과 미국의 경제사학자 Mirowski(2013)는 지금도 신자유주의를 연구하는 사람들에게는 교과서로 간주될 수 있는 저서를 출판하였다. 상이한 관점을 지닌 두 저서지만 하나의 공통점을 찾을 수 있는데, 이들 모두 Foucault의 신자유주의 연구의 핵심은 그 전의 규율권력이 지배했던 시대의 주체와는 전혀 상이한 신자유주의적 주체 또는 주체성을 Foucault가 그려내는데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들 연구들에서 우리는 신자유주의 시대를 사는 개인들은 사회에서 배제되지 않으려면 자신의 유연성을 극대화하면서 투자와 그에

따른 위협을 스스로 감수하는 기업가적 주체로 거듭 나아 한다는 Foucault의 주장을 접할 수는 있지만, Foucault가 어떠한 사유과정을 거치면서 신자유주의적 주체나 주체성을 도출했는지는 알기 어렵다.

신자유주의적 주체에 대한 Foucault의 주장들이 본격적으로 표면화되는 강의는 미국에서 시카고학파를 중심으로 신자유주의적 경제이론의 등장을 분석하는 1979년 3월 14일의 강의부터이다. 이 강의에서 우선적으로 집고 넘어가야 할 문제는 인간의 노동에 대한 신자유주의자들의 새로운 해석이다. Foucault는 이를 Marx의 노동이론과의 대비를 통해 분명히 한다. Foucault에 따르면 Marx는 노동을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의 논리에 종속되는 노동력이라는 추상적 개념을 통해서만 이해했다고 말한다. 즉, Marx는 인간 노동을 말하면서 구체적 노동과정을 무시한 채 잉여가치만을 생산하는 추상적 상품으로만 노동을 보고 있다는 것이다(Foucault, 2008: 221).

Marx의 추상적 노동 개념에 대한 신자유주의자들의 반응은 그것이 현실의 자본주의가 움직이는 방식을 고려하지 않은 단순한 이론적 산물이라는 것으로 요약된다. 신자유주의에 기초한 연구에서 중요한 것은 구체적인 노동에서 나타나는 인간의 다양한 행동과 그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내적 합리성인 것이다. 따라서 Foucault(2008: 223)는 미국의 신자유주의자들은 “처음으로 노동자가 경제적 분석에서 하나의 객체(object) - 노동력이라는 형태로서의 수요와 공급의 객체 - 로 존재하지 않고 적극적인 경제적 주체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실히 하였다”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인간의 노동을 잉여가치를 만들어내는 추상적 객체로 보지 않고 노동자 스스로 특정한 합리성에 기초하여 주체적으로 수행하는 작업으로 보는 이와 같은 시각은 그 후 신자유주의적 주체성 이론을 대표하는 인적자본 이론으로 정교화 된다. 주체로서의 노동(자)이 탄생되는 순간이다.

바로 뒤이어 Foucault(2008: 319)는 신자유주의적 주체는 “homo oeconomicus로의 회귀”로서 나타난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신자유주의에서의 homo oeconomicus는 자유주의의 그것과는 전혀 다른 속성을 지니는 것이다. 고전적 자유주의에서 homo oeconomicus는 시장에서 이해관계를 기초로 “교환”을 하는 자라면 신자유주의에서의 그것은 서로 간에 “경쟁”을 필연적으로 해야만 하는 “기업가, 그것도 자기 자신에 대한 기업가”이다(Foucault, 2008: 225-6).<sup>9)</sup> 신자유주의의 세상을 사는 인간은 자기 자신

9) 바로 이 지점에서 질서자유주의와 시카고 학파의 인적자본 이론의 접점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두 진영 간의 차이도 무시되서는 안 된다. 앞서 보았듯이 질서자유주의에서의 경쟁은 그 자체가 하나의 의도적으로 구성되는 환경이다. 그러나 Becker나 Shultz는 경쟁을 하나의 통치기제로 본다는 점이다. 시카고학파가 중시하는 환경은 경쟁 자체가 아니라 그것이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사회 전체를 시장으로 만드는 것이다.



의 삶의 모든 영역에 걸쳐서 보다 만족스러운 삶의 영위를 위해서 위험을 무릅쓴 투자를 하고 그에 따른 성공과 실패의 결과를 고스란히 자신의 것으로 하는 자들이다. 부모가 직접 자신의 아이를 돌보는 것에서부터, 대학에 진학하고, 성형수술을 하고, 결혼을 하고, 소비를 하는 모든 부분에서 사람들은 투입되는 비용, 스스로 부담해야 하는 위험성, 회수될 수 있는 혜택을 계산하여 합리적 선택을 하는 기업가인 것이다.

질서자유주의도 또한 시카고학파의 인적자본 이론도 자본주의를 사는 개인들에게 자신의 자산 가치를 끌어 올리고 이를 실현하는 존재가 되라고 주문한다. 이런 사회는 분명 “철저히 계 규율적인 사회, 즉 그 내부에서 법률적 망이 개인들을 속박하면서 이른바 규범적 메커니즘”이 지배적인 사회가 아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사회가 보다 자유롭고 소수자들에 대하여 관용을 보이는 사회일지라도, Foucault(2008: 265)의 날카로운 지적에 따르면, “(이런 사회는) 개인을 내적으로 복종화하는 유형의 개입이 아니라 환경 유형의 개입이 행해지는 사회인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비록 Marx의 추상적 노동 개념이 인간 주체의 독자성을 무시하고, 객체인 동시에 주체로서의 노동자를 보지 못했다는 시카고학파의 주장에 일정 부분 동의하더라도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개인들의 합리적 행위가 통치로부터 자유로운 행위라는 주장에는 동의할 수 없는 것이다. 신자유주의 권력은 새로운 주체를 만들어 낸다. 이 새로운 주체는 신자유주의 안에서 살아가면서 자신이 자본가인지, 노동자인지, 아니면 소비자인지를 가리지 않고 모두가 자기 자신을<sup>10)</sup> 자본으로 가지고 있으면서 그 자본의 가치를 높이려하거나 이를 투자하여 더욱 큰 만족을 얻고자하는 자들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와 같은 자기를 실현하려는 주체는 고도화되는 자본주의에서의 통치를 더욱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또는 규율권력이 약화되면서 점점 어려워지는 통치를 보다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출현한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던질 수 있는 질문은 자유주의적 주체나 신자유주의적 주체 모두 같은 정도로 권력에 종속된 존재인지, 아니면 신자유주의적 주체가 통치에서 보다 자유스러운 존재인가이다. 예를 들어 《감시와 처벌》에서 등장하는 근대적 주체는 지식과 권력 복합체에 의거하여 그것이 타율적으로든 아니면 자발적 자기감시를 통해서든 일반적으로 강제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1978년의 강의인 《안전, 영토, 인구》에서 Foucault는 “행위에 행위를 가하는 것”으로서의 통치를 말하면서 현대적 통치성의 기원을 기독교의 사목적 권력에 찾고 있는데, 이 때 형성되는 주체 역시 자신의 내면의 진실을 외부에 고백하는 형식을 통해 타율적으로 만들어 지는 것이다. 그러나

10) 여기서의 자신은 선천적으로 가지고 태어나는 자질과 능력뿐만 아니라 후천적인 교육과 훈련 등의 방식으로 취득한 모든 것을 포함한다(Foucault, 2008: 227-231).

Foucault는 신자유주의적 주체의 형성을 설명하는데 있어서 주체형성을 가능하게 만드는 법, 정책적 도구, 사회적 제도 등으로 구성된 구체적 통치기제(dispositif)에 대하여는 말을 아끼고 있다. 이 때문에 신자유주의적 주체 형성에는 개인의 몸과 정신에 작용하는 어떠한 억압적이거나 규율적인 힘이 작용하지 않는 것으로 Foucault가 보고 있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지극히 단편적인 생각이다. 그 이유는 Foucault(2008: 270)에게 신자유주의적 주체는 궁극적으로는 “현실을 수용하는 자 혹은 환경의 변수들 내에서 변화에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조정이 가능한 자 [...] 탁월하게 통치가능한 자”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몇몇 학자들은 이 지점에서 통치와 주체형성에 대한 Foucault의 연구의 단점이 나타난다고 말한다(Zamora, 2014a; 2014b, Dean, 2018a). 즉, Foucault는 한편에서는 신자유주의적 주체를 자유를 최대한으로 실현하는 존재로 보고 있는 반면, 다른 면에서는 환경에 개입하는 통치 권력에 더욱 예측된 존재로도 보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주장이 나오는 이유의 일정 부분은 Foucault에게도 있다고 보인다. 그는 신자유주의적 주체 형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역사적으로 형성되는 구체적 기제에 대하여 경쟁, 기업가적 삶, 위험과 비용 대비 효용에 대한 계산 등을 언급하고 있을 뿐 좀 더 이론적으로 일반화된 논의를 전개하고 있지는 않다.

이와 같은 비판에 대하여 Foucault의 대답을 찾기는 무척 어려운 일이다. 그 이유는 1979년 강의를 끝으로 그의 관심은 고대 그리스와 로마시대의 철학자들 사이에서 벌어졌던 주체에 대한 진실게임으로 옮겨가기 때문이다. 그러나 1979년 강의에서 Foucault가 신자유주의적 주체와 그것이 만들어지는 기제를 짧게나마 분석한 부분이 있다. 다음에는 위에서 지적한 다소 불완전해 보이는 통치와 주체와 관한 Foucault의 주장을 구체화시킨다는 의미에서, 신자유주의에서의 범죄와 범죄자에 대한 처벌에 대한 Becker의 이론에 대한 Foucault의 독자적 해석을 살펴 볼 것이다. 그리고 이곳에서 그가 신자유주의적 주체를 구체적으로 어떤 존재로 보고 있는가가 드러날 것이다.

## 2. Homo Economicus와 신자유주의적 주체

위에서 본 신자유주의적 주체 형성 문제는 Foucault가 인적 자본이론의 대가 Becker의 경제이론을 통해 범죄문제와 형사정책을 설명하면서 더욱 분명해진다. 먼저 Foucault는 18세기 말부터 이루어지는 범죄학의 발전을 다루면서 어떻게 지식과 형사법적 실천에 의해서 범죄자 개념이 만들어지는가 하는 과정을 분석한다. 당시 사

회적 범죄를 줄이려는 노력은 사회에 해악을 미치는 행동을 제거하기 위한 가장 비용 대비 효과적인 처벌을 찾는 데 집중되었다. 즉, Beccaria와 Bentham에 의해 주도된 형벌체제에 대한 개혁운동은 철저하게 비용 대비 효과를 강조하는 것이었고, 그들은 형사법체계를 공고히 하는 것이, Foucault(2008: 249)의 말을 빌리면, “거래비용”을 최소화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같은 개혁운동은 뜻하지 않은 결과를 만들어 내는데 이를 Foucault는 신자유주의가 범죄를 보는 시각을 한층 돋보이게 하는 하나의 사건으로 본다.

18세기 개혁가들이 제시하는 형벌체제에서는 처벌이나 법은 범죄행위 자체에 초점을 두기 보다는 잠재적 범죄자들에게 모범으로 보이기 위해서라도 교정되고 처벌을 받아야만 하는 범죄를 저지르는 개인을 강조하게 된다. 이 때 나타나는 말이 homo penalis로, 이는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저질렀기 때문에 처벌을 받을 가치를 지닌 존재를 뜻하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그러나 Foucault(2008: 250)에 따르면 당시 빠르게 발전하던 범죄학적 지식은 대형 형무소의 건설과 맞물리면서 homo penalis를 homo criminalis로 바꾸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인간의 한 유형으로 범죄인이 탄생되는 순간이다. 형사정책의 대상을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으로부터 범죄에 의해서 정의되는 사람으로 전환한다는 것은 사람들에게 범죄의 성립 이전에 범죄자를 먼저 생각하게 만드는 계기가 된다(Moore: 2007: 9). 범죄가 있건 없건, 이와는 상관없이 사회에는 범죄자들이 존재하게 된다. 특정 인간을 범죄자 혹은 잠재적 범죄자란 정체성으로 묶어두는 이와 같은 지식-권력의 작용은, 곧 Foucault가 그의 책 《감시와 처벌》에서 자세히 밝히듯이, 이들을 어떻게 훈육하고 규율화 시킬 것인지에 대한 논의로 발전하는 것이다.

Foucault는 Becker가 행한 범죄에 대한 경제학적 분석에 큰 충격을 받은 듯하다. Becker는, Foucault(2008: 251)에 따르면, 범죄를 “개인으로 하여금 형벌에 처해질 수 있는 위협을 야기하는 모든 행동”이라고 정의했다.<sup>11)</sup> 사실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범죄에 대한 Becker의 정의를 본다면 그것과 공리주의자인 벤담의 정의와의 차이를 놓치기 쉽다. 차이는 범죄를 보는 관점에 있음을 Foucault(2008: 252)는 분명히 한다. 과거에는 범죄를 행위를 중심으로 정의한다고 해도 그것은 국가나 사회의 관점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신자유주의 경제학자 Becker는 철저하게 범죄를 정의하는데 있

11) 경제적 행위에 대한 Becker의 정의는 그의 범죄에 대한 정의의 기초가 된다. Becker는 경제적 행위를 “환경의 변수들의 변화에 체계적으로 반응하는 모든 행동”으로 정의한다. 따라서 경제학이란 환경적 변수에 대한 반응의 체계적 성격에 대한 과학”으로 정의될 수 있다 (Foucault, 2008: 269).

어서 범죄를 일으키는 자의 또는 앞으로 일으킬 자의 관점을 유지한다. Becker에 따르면 범죄는 그것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 또는 타인에게 미치는 해악이라는 관점이 아니라 범죄행위에 따른 - 체포되어서 감금이 되거나 벌금을 물어야 하는 - 위험과 범죄를 통해 얻을 수 있다고 보는 이익을 계산하는 행위자의 관점에서 보아야 범죄에 대한 경제적인 통제도 가능해 진다고 말한다.<sup>12)</sup> 범죄에 대한 통제를 사회적 해악의 제거라는 관점에서 보다는 체포위험을 포함한 비용과 편익을 계산하는 행위자의 관점에서 보면서 사회가 용인할 수 있는 범죄공급의 균형점을 찾아가는 과정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아마 본 논문을 주의 깊게 읽은 사람이라면 범죄에 대한 이와 같은 관점의 변화와 위에서 말한 노동에 대한 관점의 변화, 즉 Marx가 보는 객체로서의 노동자에서 신자유주의자가 보는 주체로서의 노동자로의 관점의 변화와의 유사성을 알 수 있을 것이다. 18세기 형벌체제 개혁론자 이후 대부분의 개혁가들은 사회를 위협하는 범죄가 완전히 없어지는 사회를 꿈꾸었다. 그러나 Becker 등의 신자유주의 경제학자들이 보기에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할뿐더러 바람직한 것도 아니다. 그 이유는 범죄를 억제하고 적발하고 처벌하는 데는 비용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처벌은 단지 “범죄에 의해서 야기되는 부정적 외부성을 제한”하는 것으로 한정되어야 한다 (Foucault, 2008: 253). 신자유주의에서 보는 범죄에 대한 가장 효율적인 해결책은 행동으로서의 범죄의 공급에 부정적 수요로 대응하는 것으로, Foucault(2008: 256)는 다음과 같은 George Stigler의 언급을 인용하고 있다. “강제적 법률적용의 목적은 그 적용에 비용이 든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있는 사회가 자기 스스로 감수할 수 있다고 믿는 정도까지 법률이 정해 놓은 행동양식의 규칙을 사람들로 하여금 준수하게 만드는 것이다.”

homo criminalis가 상정하듯이 과거에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분석할 때 심리학, 사회학, 인류학적 지식이 동원되어서 그들을 특별한 성격이나 기질을 지닌 존재로 간주하였다. 그러나 신자유주의적 경제학자들에게 이와 같은 지식은 형사정책의 면에서는 거추장스러운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Foucault도 신자유주의 아래에서 사는 사람들을 모두 homo oeconomicus로 몰아넣지 않았느냐 하는 질문을 제기 할 수 있다. Foucault가 신자유주의 시대를 사는 사람들은 homo oeconomicus라고 말한 사실을 상기한다면 충분히 제기할 수 있는 질문이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이 때

12) 범죄에 대하여 행위자의 관점을 취한다는 것은 사회적 관점에서의 범죄의 경중을 따지는 것은 크게 중요한 일이 아니라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즉 거리에서 침을 뱉어서 경범죄에 걸리는 것이나 계획적인 살인을 저지르는 경우나 모두 행위자가 위험, 손실, 이득을 교량해서 행동한다는 점에서는 같은 것이다(사토 요시유키, 201: 62).

homo œconomicus를 통해 Foucault가 진정으로 말하고자 한 것은 위에서 말한 인간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사회과학적 범주로서의 경제인이라는 점이 결코 아니다. Foucault의 말을 빌려 보자.

주체를 homo œconomicus로서만 다룬다는 것은 주체 전반이 homo œconomicus로 여겨진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달리 말하면 homo œconomicus로서 주체를 고려한다는 것은 인류학적 방식으로 모든 행동양식을 경제학적 행동양식과 동일시 한다는 것을 함의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새로운 개인의 행동에 대한 분석에 부여되는 **인지가능성의 격자(the grid of intelligibility)**가 바로 이 homo œconomicus로서의 주체라는 것입니다(Foucault, 2008: 252, 필자강조).

Foucault는 더 이상 사람들을 다양한 지식에 기초하여 특정한 유형으로 나누고 이를 기준으로 그 사람들의 정체성을 규정하고자 하는 모든 시도에 반대한다. 그래서 Foucault에게 신자유주의 아래에서 사람들이 모두 homo œconomicus로서 간주된다는 것은 그 사람들을, 예를 들어 경제적으로 특화된 사람으로 범주화시키는 것이 아니다. 단지 그들이 행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가정 아래에서 그들의 행동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인식가능성의 격자”가 바로 homo œconomicus라는 사실만을 의미한다. 신자유주의에서 개인들을 창의적 기업가로 간주해야 한다는 점에 대하여도 비슷한 말을 할 수 있다. Foucault(2009: 226)는 과거의 자유주의가 개인을 교환의 주체로 보았다면, 신자유주의 아래에서의 개인은 필연적으로 경험해야 하는 치열한 경쟁을 대비하는 스스로에 대한 자본, 생산자, 수입의 원천이라는 사실을 숨길 필요가 없다고 말한다.

따라서 지금까지 언급한 것을 종합하여 신자유주의적 주체를 정의하면 다음과 같다. 신자유주의적 주체는 정부의 환경적 개입으로 형성된 공간 안에서 경쟁에서 낙오되지 않으면서 자신 몸과 정신 속에 있는 자산 가치를 올리라고 주문하는 homo œconomicus라는 “인지가능성의 격자”에 따라 행동하는 존재인 것이다. 현대의 개인들은 주변의 모든 것을 인식하는데 경제적 기준만을 우선시하고 다른 중요한 가치들은 아예 인식의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경향이 있다. 신자유주의적 통치는 외부에서 보면 가장 개인들의 자유를 존중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그 자유가 실현되는 공간은 통치의 용이성 때문에 사전에 기획된 공간이며, 그 속에서 자신의 욕망을 실현한다고 믿는 개인들은 Foucault의 말처럼 “탁월하게 통치 가능한” 존재로 남게 된다.

## V. 평가 - 공공성의 회복의 관점에서 -

Foucault가 신자유주의는 “환경적 유형의 개입”을 통해 개인들을 가장 통치하기 쉬운 주체로 만들면서 유지된다고 강조하고 있는 이유에 대하여 지금까지 살펴보았다. 따라서 신자유주의적 통치는 정부가 환경에 대한 개입을 통해 개인들에 대하여 간접적으로, 거리를 두고 영향을 미치면서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문제는 위에서 언급했듯이 신자유주의에서의 환경 자체의 의미, 종류, 그리고 작동방식에 대하여 Foucault의 설명이 불충분하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우리는 어느 정도의 추론을 통해 Foucault가 생각하는 환경의 구체적 의미를 밝힐 수밖에 없는 것이다.

본 연구자는 Foucault가 말하는 환경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가 생각하는 욕망과 자유의 개념에 천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Foucault는 자유주의 통치를 말하면서 처음으로 자유의 부여를 통한 통치라는 개념을 제시한다. 자유주의적 통치성에서의 자유는 권력이나 통치의 남용에 대항하는 개인의 정당한 권리로서의 의미를 지니고 동시에, 보다 더 중요하게는 “통치성 자체에 불가결한 요소”인 것이다. 이 점에 대한 Foucault(2007: 478)의 설명을 좀 더 들여보자.

이제는 자유, 혹은 자유의 몇 가지 형식이 실제로 존중되지 않는다면 제대로 통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유를 존중하지 않는 것은 법과 관련해 권리를 남용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특히 적절하게 통치할 줄 모른다는 것이기도 합니다. 자유와 자유에 고유한 한계를 통치실천의 영역 내부로 통합하는 것이 이제는 절대로 요청되는 것입니다.

자유에 대한 위와 같은 Foucault의 진술은 1978년의 4월 5일 마지막 강의에서 이루어졌다. 그리고 다음 해의 강의는 신자유주의의 본질을 탐구하는 것이 된다. 따라서 우리는 신자유주의가 자유의 허용을 통한 통치라는 자유주의적 통치성을 극단적인 형태로 완성시킨 통치라고 큰 무리 없이 유추할 수 있는 것이다. 이 점에서 최근에 출판된 Miguel de Beistegui(2018)의 《욕망의 통치》는 Foucault의 진심을 추정하는 데 상당한 시사점을 주고 있다. de Beistegui는 우선 사람들에게 거의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유를 허용하는 것은 일반 사람들의 생각처럼 바람직한 통치가 아니라 개인을 권력에 더 깊숙이 종속시키는 위험한 통치 형태일 수 있음을 지적한다. 그 이유는 과거의 자유주의 시대만 해도 욕망(desire)은 통제되어야 할 대상이었지만, 신자유주의에 들어오면서 부리는 통치의 가장 중요한 도구 또는 기제가 바로 욕망이 되었음을

지적한다. 달리 말하면, 현대인은 더 이상 그의 욕망에 반해서 통치되는 것이 아니라, 자유 시장에서 그의 욕망이 더욱 다양화되고 증폭되는 정도만큼 더 쉽게, 더 효율적으로 통치되는 것이다. 신자유주의에서의 욕망은 확대된 자유와 더불어 통치의 가장 중요하고 수월한 수단으로 통합되는 것이다. 따라서 신자유주의적 통치성은 “욕망의, 욕망을 위한, 욕망에 의한” 통치인 것이다(de Besitegui, 2018: 33).

따라서 우리는 신자유주의가 개인들에 대하여 허용하는 폭넓은 자유는 그 자체가 우리를 가장 통치하기 쉬운 존재로 만들어가려는 목적을 가지고 조성된 환경으로 볼 수 있다. 신자유주의에서의 자유는 외부적 간섭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할 개인적 자유의 공간 또는 법률적 지위와는 분명히 구분되어야 한다. 그 자유는 더욱 중요하게는 통치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을 욕망에 따라 움직이는 존재로 변화시킬 수 있는 환경에 의해서 생산되고, 촉진되고, 권장되는 가운데 나타난 효과인 것이다. 따라서 이렇게 인위적으로 조성되는 자유는 신자유주의적 통치 합리성에 의해서 통제되고, 규제되면서 종국적으로는 개인들을 자본주의의 무한한 확장의 희생양이 되게끔 활용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신자유주의가 스스로의 존립의 요건으로 그렇게 금과옥조로 삼는 개인들의 욕망이 무한정으로 펼쳐지는 장으로서의 자유란 것은 특정한 형태의 통치성의 도구나 수단에 불과한 것이다.

방금 전 위에서 개인들은 신자유주의가 만든 환경 속에서 욕망의 실현을 꿈꾸다 자칫 희생양으로 전락할 수 있음을 언급했다. 이 부분에 대한 Wendy Brown의 통찰은 우리의 암울한 현실을 잘 대변해주고 있다. Brown(2015: 131-134)의 연구에 따르면, 신자유주의 아래에서 모든 주체를 자신이 자신에 대해서 한 투자에 대하여 스스로 책임지는 주체로 만드는 “책임화(responsibilization)”는 개인들을 무조건 이익만을 추구하는 존재에서 현재의 정치, 경제적 상황에서 나오되지 않는 것을 최상의 과제로 여기는 주체, 즉 경제 전체의 건전성에 종속되는 주체로 만든다는 것이다. 신자유주의를 사는 개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자신의 이익이 침해받는 것이 아니라 국가나 회사의 경쟁력을 위해서 자신이 희생양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다. Brown의 다음과 같은 주장은 신자유주의를 가장 잘 대표하는 개념이 이익이 아니라 희생이 될 수 있음을 명백히 한다.

[...] (교전적 자유주의에서는) 자신만의 이익을 추구하고 (이와 같은 행위들이) 행위자들도 모르게 집합적 이익을 창출했다면, 오늘날 신자유주의적 개인, 인적 자본으로서의 자신들의 존재가 연계되어 있는 것은 거시 경제적 성장과 신용등급의 향상이다 [...] 개인, 회사, 산업들이 (경제성장과 신용등급의 향상에) 공헌할 수 없고 단지 걸림돌이 된다면 그들은 정당하게 버려지거나 재형성되어야 한

다(Brown, 2015: 84).

따라서 본 연구자는 신자유주의에서 Foucault가 말하는 “환경적 유형의 개입”에 서의 환경을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끊임없이 확장하는 인간의 욕망과 그것의 실현을 약속해 주는 자유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신자유주의를 건설하는데 독일의 질서자유주의자들이 가장 중요한 환경이라고 말한 경쟁이나 미국의 시카고학파의 학자들이 말하는 인간 삶의 모든 영역에 대한 시장화 역시 만족을 모르는 욕망과 자기 실현의 자유에 의존하면서 만들어지는 환경으로 볼 수 있다. 사람들은 세계화가 진전 되면서 서로 다른 문화, 가치관, 종교 등이 충돌하게 되면 세상은 더욱 무질서해질 것 이라고 생각하곤 한다. 그러나 이처럼 전지구적 차원에서 민족이나 개인들이 서로 ‘다름(difference)’을 추구하는 것은 신자유주의에게 더할 나위 없이 자신의 영향력이 확대되는 좋은 기회가 된다. 끝없는 욕망의 확장과 서로가 다를 수 있다는 자유의 보장 아래에서 개인들은 더욱 통치되기 쉬운 존재로 남게 된다는 것에 Foucault 역시 동의하지 않을 수 없다고 보인다. 이 과정에서 자유로운 환경에서 욕망의 실현을 꿈꾸 는 대부분의 개인들은 “책임화”라는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존재가 되면서, 전체의 행복을 위해 희생될 수 있다는 위험을 안고서 살게 된다.

지금까지 평가한 Foucault가 분석한 신자유주의적 통치성 아래에서 과연 공익, 또는 공공성의 의미는 무엇이고 그것을 지금이라도 되살릴 수 있는 불씨는 남아있는 것 일까? 불씨가 있다면 그 불씨를 찾는 방식에는 아마도 두 가지 관점이 있을 것이다. 하나는 지금도 신자유주의를 가능하게 하는 환경적 개입을 통한 통치를 극복할 수 있는 수단들을 각각의 개인들이 이미 지니고 있다고 보는 견해이고, 다른 관점은 전통적 이고 제도적 방법으로는 신자유주의를 극복할 수단은 없어진지 오래고, 보다 혁명적 이고 메시아적 관점에서만 현재를 극복하는 방법을 찾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전자를 대표한다고 보이는 학자는 위에서 말한 Wendy Brown이나 Judith Butler라면 후자 를 대표하는 학자는 Slavoj Žižek이나 Giorgio Agamben을 말할 수 있다. 본 논문 은 자체로 개혁이나 아니면 혁명이나를 정당화하려는 논문이 아니기 때문에 후자의 학자들의 주장은 이 분야의 전문가들에 넘기고, 신자유주의도 충분히 현재의 제도적 틀 안에서 공공성의 회복을 통해서 극복될 수 있다고 믿는 Brown의 주장만을 간략히 검토할 것이다.

Brown에 따르면 인간은 그들이 어떤 시대나 세상에서 사는지와 관계없이 Aristotle 이 그의 《정치학》 제1권에서 분명히 밝히듯이 존재론적 의미에서 정치적 동물, 즉 homo politicus이다. 그러나 Foucault의 강의에서 인간은 homo oeconomicus가



아니라면 homo juridicus 또는 homo legalis의 형태로만 정의되고 있다. 여기서 후자는 법적인 의미에서 “권리의 주체”로서의 개인을 말하는 것으로, 근원적으로는 국가의 주권(sov<sup>er</sup>ignty)에서 연역되어 나온 개념이다(Foucault, 2008: 276). 그러나 Brown(2015: 87)은 단호한 어조로 “시초에 homo politicus가 있었다”라고 말하면서, “인간은 자연적으로 폴리스에서 살아야 하는 동물”이라는 Aristotle의 《정치학》 구절을 인용하고 있다. 인간의 정치적 본성을 인간이 인간이기 위한 조건으로 보는 Aristotle적 시각을 별다른 비판 없이 채택하고 있는 Brown에 따르면,<sup>13)</sup> 이 때 정치적 본성은 인간들이 서로 간의 속의를 하면서 공동체적 삶을 살고, 생물적 필요나 요구를 초월하는 공공선에 입각한 자치를 가능하게 만들며, 인간의 자유와 완벽가능성(perfectibility)을 추구할 수 있는 것을 가능하게 해준다. 따라서 Brown이나 Aristotle의 인간 본성에 대한 형이상학에 따르면, 신자유주의를 가능하게 하는 환경인 욕망과 자유는 인간의 삶의 목적을 생물학적 삶의 유지로 간주하는 oikos에서나 말할 수 있는 것으로, 서로 간에 언어를 사용하면서 소통하고, 공동체의 정의(justice)를 공동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인간에게는 언제나든 극복 가능한 것이 되는 것이다.

Macpherson(1962)에 따르면 John Locke에서 시작하는 자유주의에서 보는 개인은 “소유하는 개인(possessive individual)”이었다. 이는 서양에서 18-19세기에 오면서 인간이 본래적으로 homo politicus라는 사실이 망각되기 시작했다는 의구심을 불러일으킨다. 그러나 브라운은 위에서 말한 자유주의의 주창자들도 정치적 존재로서의 인간을 결코 망각한 적이 없음을 분명히 한다. 그리고 Brown(2015: 94)이 말하듯이 다음과 같은 역사적 사실이 자유주의 시대의 인간이 결코 homo œconomicus로서만 존재하지 않았음을 증명한다.

18, 19, 20세기에 있었던 정치적 해방, 참정권, 평등의 추구하고 좀 더 급진적 순간에 있었던 실질적 국민주권의 추구는 homo œconomicus로부터 생겨날 수 없는 것은 물론 경제적 언어로 구성될 수 없다는 사실은 너무나 명백한 사실이다. 물론 계급이익은 정치적 주장과 교차할 수 있지만 homo politicus는 자본의 얼룩으로서의 인간의 이미지에 의해서 대체되지는 않았다.

13) 이 부분 즉 브라운이 인간은 정치적 동물이라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생각을 자신의 주장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심하게 왜곡하고 있다고 Chambers(2018)는 주장하고 있다. 그의 비판의 요지는 homo politicus라는 라틴 합성어는 오직 19세기부터 등장하는 개념으로 아리스토텔레스 자신에게는 생소한 개념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브라운의 아리스토텔레스에 대한 해석을 읽을 때는 이를 감안하고 읽을 필요가 있다.

정리해서 말한다면, 현대의 신자유주의 시대를 사는 개인을 보는 “인식 가능성의 격자”로서 homo œconomicus만을 강조하는 것은 인간이 본래적으로 교환이나 경쟁만 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 자체를 추구하고, 그 과정에서 공공선을 공동으로 사유할 수 있는 정치적 공동체를 만들어 갈 수 있다는 가능성을 부정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Brown은 21세기 들어 신자유주의적 정부개혁에 대하여 나타난 새로운 통치 형식으로 불리는 거버넌스(governance) 역시 인간을 homo œconomicus로 간주하는 한 신자유주의의 변형된 형태에 불과한 것이라고 주장한다.<sup>14)</sup> 달리 말하면, 아무리 신자유주의가 인간의 욕망과 자유를 활용하면서 스스로를 유지, 발전시켜 나간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인간의 또 다른 면, 즉 Hannah Arendt도 강조하는 polis(공동체) 속에서 언어와 행위를 통해 자신의 독창성을 들어내려는 한 차원 높은 인간의 자유와 욕망은 분석에서 제외하는 큰 오류를 범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Brown의 논의를 따라가다 보면, 신자유주의는 homo politicus로서의 인간 본성 자체를 파괴시키지 못하는 한 그것을 하나의 완성된 통치 체제로 보기 어려운 것이다. 바꿔 말하면 인간이 homo politicus라는 성격을 지닌 존재라는 것이 다시금 인식되는 미래의 어느 순간 공동의 노력으로 신자유주의는 극복될 수 있는 통치 형태가 되는 것이다.

## VI. 맺음말

본 연구는 신자유주의에서 어떻게 개인들이 통치 가능한 존재가 되는가의 문제를 Foucault의 1979년의 강의를 중심으로 풀어보려는 목적을 가지고 수행되었다. Foucault는 신자유주의의 특징을 개인들에게 최대한의 자유를 주고 또는 욕망의 실

14) Brown(2015: 122-129)은 특히 20세기에 들어오면서 거버넌스라는 중립적 개념이 행정적 문제의 해결에 구세주처럼 등장한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 거버넌스가 비록 참여, 협력, 공사협조 등을 강조하지만 이는 문제해결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치열한 정치적 갈등이 배제된, Zizek(2002: 11)의 말을 빌리면 카페인 없는 커피와 같은 개념인 것이다. 공공의 영역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져야 하는가? 그것은 공동선 또는 정의에 대한 심의와 숙고, 가치나 목적을 둘러싼 치열한 경쟁, 권력을 둘러싼 투쟁, 전체의 선을 위한 비전의 창출 등이 될 것이다. 그러나 homo œconomicus로만 채워진 거버넌스에서 공적인 삶이란 정치, 갈등, 공동선에 대한 숙고는 사라지고 오로지 문제해결, 사업의 집행만이 있게 된다. 그리고 공적인 삶의 축소와 의견일치(consensus)에 대한 강박증적인 강조가 결합할 때 정치나 갈등은 무조건 회피해야 할 대상이 된다. 더 나아가서 흔히 자본주의적 경제모델의 문제점을 점진적인 방식으로 해결해 보려는 사회적 경제나 협동조합 등도 구성원 스스로가 자신을 homo œconomicus로 인식하고 행동하는 한 효율성, 벤치마크, 경제성의 개념을 추구할 수밖에 없으면서 그 본래의 취지를 잃게 될 가능성이 커지는 것이다(김주환, 2017).

현을 약속해주면서 동시에 그것들의 지속적인 경제화, 상품화를 통해 그 실현을 무한히 연기할 수 있는, 또 그렇게 함으로써 개인들을 계속 통치의 대상으로 묶어두는 하나의 통치 합리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서 개인들은 자유주의에서처럼 규율의 대상으로는 간주되고 있지 않고 외적으로 보면 자유롭게 행동하는 존재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자본이나 정부가 조절할 수 있는 환경적 변수에 반응하는 수동적 존재에 불과한 것으로 규정되고 있으며, 이를 Foucault는 신자유주의의 “환경적 유형의 개입”으로 개념화 시킨다.

1979년의 Foucault의 강의가 신자유주의를 연구하는데 중요한 이유는 그것이 위치한 시대적 맥락이다. 강의는 신자유주의 시대의 막을 공식적으로 열었던 마가렛 대처가 영국의 수상이 되고 로널드 레이건이 미국의 대통령이 되기 몇 개월 전에 끝났다. Foucault의 1979년의 강의는 그러므로 새로운 시대의 서막을 예고하는 것이었다. 또한 공교롭게도 강의가 영어로 출판된 해인 2008년은 세계적 금융위기가 절정에 다다른 시기였다. 신자유주의의 종언을 알리는 듯 보였던 금융위기는 푸코의 강의를 또 다른 시각으로 보는 기회를 제공했다. 많은 전문가들은 강의에서 Foucault가 말했던 바를 역사적 현실에 적용시켜 볼 때 그의 통찰력은 대단한 것이었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하곤 하였다.

그러나 역사가 Foucault가 예언한대로만 움직인 것은 물론 아니다. Foucault는 신자유주의를 신봉하는 정부가 환경적 개입을 통해 인간을 가장 통치 가능한 존재로 만든다는 일반적 주장을 했지만, 2008년 금융위기 이후 터져 나온 자신을 통제하는 노동이나 주거환경 등에 대한 저항운동, 대표적으로 세계 곳곳에서 일어났던 자율운동(autonomia movement)이나 점거운동(occupy movement) 등은 신자유주의에서의 인간들이 아직은 Foucault가 말하듯이 “탁월하게 통치 가능한(eminently governable)” 존재는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다.

신자유주의가 공공성에 미치는 가장 나쁜 영향은 그것이 모든 개인들을 교환하는 존재를 뛰어넘어 치열한 경쟁에 내몰리는, 스스로에 대한 투자자, 기업가로 간주함으로써 상호 호혜성에 기초한 공적 인간과 상호 유대성에 기초한 공동체의 형성을 애초부터 부정한다는 점이다. 최근의 연구들은 신자유주의의 냉혹성에 대해서 나타났다고 설명되어지는 협력적 거버넌스, 사회적 경제, 협동조합과 같은 실천적 활동들 역시 사실은 이미 자본에 포획된 상태에 있는 것으로, 그것들이 겉으로 표방하는 공공성은 공허한 것이라고 말한다. 더 나아가서 전체 국가나 조직의 경쟁력을 위해서라면 희생을 강요당할 수밖에 없는 현대인들의 비참한 상황도 공공성의 축소 내지는 소멸을 재촉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신자유주의적 통치성, 신자유주의적 주체를 극복

하고 공적 영역과 공동성의 기초를 재정립하려는 시도는 그 통치성과 주체를 구성하는 핵심 요소들에 대한 정면 공격의 형태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된다.

여기서 우리는 Foucault가 내리는 권력과 자유에 대한 개념 정의를 다시 생각할 필요가 있다. Foucault에 따르면, 권력이란 누군가 소유하거나 일방적으로 행사하는 물리력, 영향력 같은 실체가 아니라 하나의 전략적 관계일 뿐이다. 여기서 전략적 관계란 권력의 행사는 대상자의 자유를 반드시 전제로 해야만 한다는 뜻이다. 다음과 같은 Foucault(2007: 478)의 진술을 들어보자: “이제는 자유, 혹은 자유의 몇 가지 형식이 실제로 존중되지 않는다면 제대로 통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유를 존중하지 않는 것은 [...] 적절하게 통치할 줄 모른다는 것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자유가 통치의 수단이 될 뿐만 아니라, 통치가 자유에 필연적으로 의존하기 때문에 자유를 주체적으로 활용한다면 현재의 통치에 저항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무기도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달리 말하면 우리의 욕망과 자유라는 환경 때문에 신자유주의적 통치가 가능하다는 사실은 우리가 그 욕망과 자유를 어떻게 활용하는가에 따라 신자유주의적 통치도 변화할 수 있음을 암시하는 것이다. Diltz(2011)에 따르면 Foucault의 관심이 1979년 강의를 끝으로 근대와 현대에서 고대 그리스와 로마시대로 옮겨가는데, 그 이유는 고대시대의 사람들이 “자기배려(care of the self)”라는 형식을 통해서 자신의 자유를 적극적으로 활용했고 결과적으로 새로운 형태의 주체형성으로 나아갔음을 보여주기 위해서였다는 것이다. 이는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주어진 통치성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해주는 간접적이지만 강력한 메시지인 것이다.

## ■ 참고문헌

- 김주환. 2017. 《포획된 저항: 신자유주의와 통치성, 헤게모니 그리고 사회적 기업의 정치학》. 서울: 이매진.
- 리자자와 가즈야, 다카쿠와 가즈미 역음. 2015. 《푸코 이후: 통치성, 안전, 투쟁》. 김상운 옮김. 서울: 난장.
- 사토 요시유키. 2014. 《신자유주의와 권력: 자기-경영적 주체의 탄생과 소수자-되기》. 김상운 옮김. 서울: 후마니타스.
- 시카이 다카시. 2011. 《통치성과 자유: 신자유주의 권력의 계보학》. 오하나 옮김. 서울: 그린비

- Becker, Gary, S., François Ewald, & Bernard E. Harcourt. 2012. "Becker on Ewald on Foucault on Becker: American Neoliberalism and Michel Foucault's 1979 "Birth of Biopolitics" Lectures." *Institute for Law and Economics Working Paper*, No. 614. Chicago, IL: University of Chicago Law School.
- Bonefeld, Werner. *The Strong State and the Free Economy*. London: Rowman & Littlefield International.
- Brown, Wendy. 2015. *Undoing Democracy: Neoliberalism's Stealth Revolution*. New York: Zone Books.
- Chambers, Samuel A. 2018. "Undoing Neoliberalism: Homo (Economicus, Homo Politicus, and the Zōon Politikon)." *Critical Inquiry*, 44:706-732.
- Clarke, John et al. 2007. *Creating Citizen Consumers: Changing Publics and Public Services*. London: SAGE.
- De Beistegui, Miguel. 2018. *The Government of Desire: A Genealogy of the Liberal Subject*.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Dean, Mitchell. 2018a. "Foucault and Neoliberal Controversy." In Damina Cahill et al. (eds). *Sage Handbook of Neoliberalism*. London: SAGE.
- \_\_\_\_\_. 2018b. "The Secret Life of Neoliberal Subjectivity." In Sanford F. Schram and Marianna Pavlovskaya (ed.) *Rethinking Neoliberalism: Resisting the Disciplinary Regime*. New York: Routledge.
- Dean, Mitchell, & Kaspar Villadsen. 2016. *State Phobia and Civil Society*.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 Dilts, Andrew. 2011. "From 'Entrepreneur of the Self' to 'Care of the Self': Neoliberal Governmentality and Foucault's Ethics." *Foucault Studies*, No. 12: 130-146.
- Dardot, Pierre & Christian Laval. 2013. *The New Way of the World: On Neoliberal Society*. Trans. Gregory Elliot. London: Verso.
- Gane, Nicholas. 2013. "The Emergence of Neoliberalism: Thinking Through and Beyond Michel Foucault's Lectures on Biopolitics." *Theory, Culture and Society*, 31(4): 3-27.
- Foucault, Michel. 1977. *Discipline and Punish: The Birth of the Prison*. London, PenguinBooks. 오성근 역 (2016), 《감시와 처벌: 감옥의 탄생》. 서울: 나남
- \_\_\_\_\_. 1979. *The History of Sexuality, Vol. I: An introduction*. London: Penguin.

- 이규현 역 (2004), 《성의 역사 1: 지식의 의지》. 서울: 나남
- \_\_\_\_\_. 2003. *Society Must Be Defended. Lectures at the Collège de France. 1975-76.* New York, Palgrave Macmillan. 김상운 역.(2015), 《사회를 보호해야 한다》. 서울: 난장
- \_\_\_\_\_. 2007. *Security, Territory, Population. Lectures at the Collège de France. 1977-1978.* New York, Palgrave Macmillan. 오토르망 역(2011), 《안전, 영토, 인구》. 서울: 난장
- \_\_\_\_\_. 2008. *The Birth of Biopolitics. Lectures at the Collège de France. 1978-1979.* New York, Palgrave Macmillan. 임세광 외 역(2012), 《생명관리정치의 탄생》. 서울: 난장
- Hamann, Trent H. 2009. "Neoliberalism, Governmentality, and Ethics." *Foucault Studies*, No. 6: 37-59.
- Lemke, Thomas. 2014. "New Materialisms: Foucault and the 'Government of Things.'" *Theory, Culture and Society*, 32(4): 3-25.
- Lorenzini, Daniele. 2018. "Governmentality, Subjectivity, and the Neoliberal Form of Life." *Journal for Cultural Research*, 22(2): 154-166.
- Macpherson, Crawford Brough, & Frank Cunningham. 1962. *The Political Theory of Possessive Individualism: Hobbes to Lock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Moisander, Johanna, Claudia Groß, & Kirsi Eräranta. 2017. "Mechanisms of biopower and neoliberal governmentality in precarious work: Mobilizing the dependent self-employed as independent business owners." *Human Relation*, 71(3): 375-398.
- Moore, Daw. 2007. *Criminal Artefacts: Governing Drugs and Users.* Vancouver: UBC Press.
- Morowski, Philip. 2013. *Never Let a Crisis Go to Waste: How Neoliberalism Survived the Financial Meltdown.* London: Verso.
- Newman, Janet, & John Clarke. 2009. *Publics, Politics, and Power: Remaking the Public in Public Services.* London: SAGE.
- Oksala, Johanna. 2016. "Foucault, Husserl and the philosophical roots of German neoliberalism." *Continental Philosophy Review*, 49(1): 115-126.
- Peters, Michael A. 2007. "Foucault, Biopolitics and the Birth of Neoliberalism."

*Critical Studies in Education*, 48(2): 165-178.

- Schuilenburg, Marc, & Rik Peeters. 2015. From Biopolitics to Mindpolitics Nudging in Safety and Security Management. available at [http://www.marcschuilenburg.nl/\\_downloads/From%20Biopolitics%20to%20Mindpolitics.pdf](http://www.marcschuilenburg.nl/_downloads/From%20Biopolitics%20to%20Mindpolitics.pdf).
- Stiglitz, Joseph. 2017. 《유로: 공동통화가 어떻게 유럽의 미래를 위협하는가》. 박형준 옮김. 서울: 열린책.
- Taylan, Ferhat. 2017. “Mesopolitics: Foucault, Environmental Governmentality and the History of the Anthropocene.” In Philippe Bonditti et al. (eds.) *Foucault and the Modern International: Silences and Legacies for the Study of World Politics*. New York: Palgrave Macmillan.
- Van Der Bart, Johan. 2016. “When One Religious Extremism Unmasks Another: Reflections on Europe’s States of Emergency as a Legacy of Ordo-Liberal Dehermeneuticisation.” *New Perspective*, 24(1): 79-102.
- Zamora, Daniel. 2014a. “Can We Criticize Foucault?” *Jacobin*, available at [www.jacobinmag.com/2014/12/foucault-interview/](http://www.jacobinmag.com/2014/12/foucault-interview/)
- \_\_\_\_\_. 2014b. “Foucault’s Responsibilities.” *Jacobin*, available at [www.jacobinmag.com/2014/12/michel-foucault-responsibility-socialist/](http://www.jacobinmag.com/2014/12/michel-foucault-responsibility-socialist/)
- \_\_\_\_\_. 2016. “Foucault, the Excluded, and the Neoliberal Erosion of the State.” In D. Zamora & M. Behrent (eds.) *Foucault and Neoliberalism*. Cambridge: Polity Press.
- Zizek, Slavoj. 2002. *Welcome to the Desert of the Real*. London: Verso.

## Neoliberal Governmentality, Subjectivity, and the Public: Another Interpretation of Foucault's 1978 and 1979's Lectures

Moon-Soo Lee

This Study aims to explicate Michel Foucault's argument concerning how neoliberal subjects are easier targets of government, largely based on his lectures at the Collège de France during 1978-79. Foucault saw neoliberalism as a type of governmental rationality, in which individuals are promised to be capable of realizing their desires while those desires are incessantly postponed as the intensity of economization and commodification in ever-growing fields of individuals' lives increase. For Foucault, such a promised but incessantly postponed fulfillment of one's freedom and desires constitutes one of the most important features of neoliberalism, making individuals in neoliberalism "eminently governable." Individuals in neoliberalism can be seen to be relatively free from discipline and control, but, in fact, they are not less than passive subjects systematically responding to the environmental variables manipulated by both the government and business, and Foucault generalizes it as an environmental intervention of neoliberalism. This study, then, makes clear what environment means for Foucault by delving not only into the historical alterations of its meaning across several centuries in Europe, but also into the theoretical origins in both German *ordo-liberalism* and Chicago School economists. Despite the fact that Foucault rarely gave a clear-cut definition of environmental intervention in neoliberalism, this study suggests a new interpretation which argues that the kernel of intervention lies in desire and freedom. Lastly, the issue of shrinking importance of 'the public' in neoliberalism is tackled with a view of the possibility of counter-acting the current trend by utilizing the very weapon of neoliberalism.

※ Keywords: neoliberalism, neoliberal subject, environmental intervention